

김웅 / 6월 / 실전GS / 3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8865	20	10	20.5	9.5	60	1	1.79%	56
551657	19.5	9	20	11.5	60	1	1.79%	
564088	18.5	12	18	10	58.5	3	5.36%	
565147	19	11	18.5	9.5	58	4	7.14%	
564172	16.5	13	19.5	8.5	57.5	5	8.93%	
564854	18	10.5	18.5	9.5	56.5	6	10.71%	
565306	18.5	11	17	10	56.5	6	10.71%	
563853	19	11.5	15.5	9.5	55.5	8	14.29%	
564048	19	7.5	18.5	10	55	9	16.07%	
564239	15	11.5	19.5	9	55	9	16.07%	
565524	18	9.5	18	9.5	55	9	16.07%	
564309	17.5	10	18.5	8.5	54.5	12	21.43%	
565222	18.5	11	18.5	6.5	54.5	12	21.43%	
565408	16	10	19.5	9	54.5	12	21.43%	
564278	19	9	18	8.5	54.5	12	21.43%	
565299	17	10.5	18.5	8	54	16	28.57%	
565475	18	10	16	10	54	16	28.57%	
564708	20.5	10	14	8.5	53	18	32.14%	
563814	18.5	7	19	8	52.5	19	33.93%	
565355	15	9	19.5	9	52.5	19	33.93%	
556213	18.5	9	15	9.5	52	21	37.50%	
564571	16	10.5	16	9.5	52	21	37.50%	
564001	17	10.5	16	8.5	52	21	37.50%	
563800	17	7.5	19	8	51.5	24	42.86%	
562174	16	9	17.5	8.5	51	25	44.64%	
563809	15.5	9.5	17.5	8	50.5	26	46.43%	
563821	19.5	9	15	7	50.5	26	46.43%	
563897	17.5	8	17.5	7.5	50.5	26	46.43%	
564159	19	9	15	7.5	50.5	26	46.43%	
564577	18.5	7	15.5	9.5	50.5	26	46.43%	
563876	14	8.5	17.5	10.5	50.5	26	46.43%	
548652	18.5	9	14	8.5	50	32	57.14%	
563811	16.5	8	16	9.5	50	32	57.14%	
564842	15.5	12	14.5	7.5	49.5	34	60.71%	
556214	18	9	14	8	49	35	62.50%	
564184	12.5	7.5	19	10	49	35	62.50%	
564533	15.5	7.5	19	7	49	35	62.50%	
565251	17.5	9	14	8	48.5	38	67.86%	
563919	15.5	5	18.5	8	47	39	69.64%	
563855	16	9	13	8	46	40	71.43%	
564212	15.5	7	14.5	9	46	40	71.43%	
556305	13	10	16.5	6	45.5	42	75.00%	
564929	12	9	17	7.5	45.5	42	75.00%	
565168	12.5	8.5	15.5	8.5	45	44	78.57%	
563824	14.5	7.5	16.5	6	44.5	45	80.36%	
556408	16.5	6	12	9.5	44	46	82.14%	
563820	14.5	3	18.5	7.5	43.5	47	83.93%	
565661	13	9	14	7.5	43.5	47	83.93%	
548590	15	4.5	15.5	5.5	40.5	49	87.50%	
556448	13	7	14	6.5	40.5	49	87.50%	
563878	9.5	7	16.5	7	40	51	91.07%	
563872	16.5	4.5	16.5	2	39.5	52	92.86%	
564026	12.5	7.5	12	7	39	53	94.64%	
556205	13.5	6.5	9	9.5	38.5	54	96.43%	

556416	9	5	13	8.5	35.5	55	98.21%
563798	14	5	9	5.5	33.5	56	100.00%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3회/1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적용 요건을 작성한 후 각 출원 디자인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배점이 15점으로 매우 크므로 최소 2페이지 이상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적용 요건을 물어봤으므로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 등을 목차를 세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절차적 요건을 작성한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이와 같은 일반론 문제의 경우 분량만 채운다면 대부분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당히 내용을 채운 후에 다음 설문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p> <p>(2) 설문 2</p> <p>총 3가지 사례의 등록 가능성을 위에서 작성한 적용요건을 기초로 검토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사례 1) 신규성 판단 시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앞서 반드시 물품 유사 판단을 선행해 주셔야 합니다. 양 디자인의 차이가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흠결된다고 결론 내린 답안이 일부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결론을 숙지해 주세요.</p>	

(사례 2) 물품 유사 판단의 경우 “화이트보드”와 “책장”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답안이 일부 있었는데, 이 경우 설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배점이 5점에 해당하므로 신규성을 구비한다는 전제하에 창작비용이성까지 판단할 것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사례 3) 바나나의 형태는 공지디자인이 아니므로 신규성을 구비한다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3. 소결

논점이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이므로 다들 논점이탈 없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 사안 포섭을 얼마나 두껍고, 논리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할 때도 단순히 “해당 디자인은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여 창작 비용이성 흠결로 판단된다”고 작성하기보다는 디자인의 어떠한 부분이 흔한 창작수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 포섭의 경우 판례집을 읽으면서 감을 잡아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3회/2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창작비용이성과 부등록사유를 물어보는 20점짜리 통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저금통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3류에 속하는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이므로 일부심사등록에 관한 일반론을 작성한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p> <p>하지만, 해당 일반론에 대하여 두껍게 작성한 나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창작비용이성과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적게 작성하거나 논점을 이탈한 경우에는 강약 조절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p> <p>신규성을 검토한 경우에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신규성보다도 창작비용이성이 메인 논점에 해당하므로 길게 작성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창작 비용이성의 전제 조건으로써 신규성을 구비한다고 간단히 작성한 후에 바로 창작 비용이성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p> <p>부등록 사유 논점을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설문과 같이 비교대상 디자인이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혼동 염려가 있으므로 34조 3호가 논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p> <p>문제의 배점이 크므로 창작비용이성과 부등록 사유의 일반론 또한 어느 정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b>3. 소결</b></p> <p>문제-2의 경우 논점을 누락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누락한 논점은 기본서나 오답 노트에 작성해 두시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p>	

**‘창작비용이성’ 을 ‘진보성’ 이라고 작성하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절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3회/3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관련 디자인에 관한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동적 디자인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작성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갑의 디자인 B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을 설문에서 물어봤으므로 등록요건을 작성한 후 사안 포섭까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신규성이 위반되므로 조치로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작성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의 출원 사이에 자기의 기본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이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길게 작성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p> <p>(3) 설문 3</p> <p>제35조 4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35조 4항을 설문 2에 작성한 분이 많이 계셨는데, 설문 2와 3의 차이를 확인하고 넘어가주세요. 설문 2는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이고, 설문 3은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p> <p>(4) 설문 4</p> <p>35조 2항과 3항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설문상 디자인 C가 디자인 A와 유사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디자인 C가 관련디자인 B와만 유사한 경우와 디자인 C가 디자인 A와 유사한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3. 소결**

논점이 비교적 명확한 설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논점 이탈이나 누락 없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김웅/6월/실전GS/3회/4번</b></p>	<p><b>채점자</b></p>
	<p><b>윤영우</b></p>
<p><b>1. 전반적인 총평</b></p> <p>확대된 선출원주의에 관한 논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b>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b></p> <p>(1) 설문 1</p> <p>확대된 선출원의 적용 요건을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시기적 요건으로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답안에 없는 내용이라도 타당한 경우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1에서 작성한 주체적, 시기적, 객체적 요건을 각각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객체적 요건의 경우 용도와 기능의 공통성, 형태의 유사성, 대비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고루 작성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3) 설문 3</p> <p>설문 2와 마찬가지로 주체적, 시기적, 객체적 요건을 각각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경험칙에 의한 보충 판례(2006후2646)를 따로 작성한 경우 추가적으로 점수를 드렸습니다.</p> <p>객체적 요건 판단 시 대비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고 작성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설문의 경우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도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불가한 경우이므로 대비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작성하는 편이 옳아 보입니다.</p>	

### **3. 소결**

**실전 GS 3회차도 작성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문제 4번까지 큰 시간 부족 없이 답안을 작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초 GS 때에 비해 시험에 대한 대비가 전반적으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약 한달 동안, 디자인 보호법은 평소와 같이 공부하시되 본인이 취약한 부분, A급 논점들 위주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0.5

번호

[ 문제 ]

I. 실용 (1)

1. 신규성과 창작비용의성

(1) 제 33조 1항 각호 - 신규성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제 33조 2항 - 창작비용의성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구체적 요건 비교

(1) 공통점

신규성과 창작비용의성 모두 공지주체를 넓혀주고 적용된다.

(2) 차이점

신규성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창작 비용의성의 경계는 당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시기적 요건 비교

신규성과 창작 비용의성 모두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여기서 말하는 출원서는 시, 불로서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 4. 객체적 요건 비교

##### (1) 공통점

①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모두 공지된 디자인으로 복제 비교대상이 된다. 즉 출원전 공지, 공연적 실시, 발표된 걸행물에 게재, 전기통신통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한 디자인은 비교대상이 된다.

② 두 규정 모두 법 36조 신규성 상실 예외의 대상이 된다.

##### (2) 차이점

① 신규성은 물품이 출원대상인 장치에 적용한다. 창작비용이성은 비사 물품장에도 적용 가능하다.

② 신규성은 판단할 때는 선행디자인 단일이 원칙으로 하나의 디자인과 비교하는 하지만 창작비용이성의 경우 여러 공지된 디자인의 조합으로도 비교가 가능하다.

③ 신규성은 공지된 디자인과 출원대상인 여러를 판단하는 반면 창작비용이성은 통상적인 자녀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

④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할에 있어서는 특  
 332 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디자인인지 먼저  
 판단을 한 후에 신규성 흡결치 성다면 창작  
비용이성을 판단한다.

⑤ 일부 심사등극 디자인 출원시 경우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은  
 모두 고려하지 않지만 신규성이 경우 위반이 성  
 배한다면 심사가 가능하고 창작비용이성이 경우  
 권리행사는 심사판이 고려가 가능하다.

#### 5. 지역적 기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모두 국내외에서 공시된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다.

#### 6. 방법적 기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II. 실문 (2)-1

1. **3.5** 실문 정리

하수관통 막대형기구와 광활케 출원디자인이 신규성을 갖지 못했는지 갖지 못했다면 **창작성의성이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 2. 신규성 거부여부 - 적극

(1) 디자인 유사 판단 **취지**

디자인의 구성요소 각각을 대별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로서 대략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이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차별성을** 캐어준다.

## (2) 사안

① **물결은 높일라고** ② 형상을 살펴볼 때 양디자인 모두 물체하부에 **방사형 질감**이 다수형성되고 막대형상의 **양심개폐부가 형성된 공통점을** 가지지만, 질감에 있어 **느껴지아치형, 4개씩 삼각형 양심개폐부가** 별모양과 U자형인 **특징에** 차이가 있어 **비슷하다고 보므로 양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

## 3. 창작성의성 거부여부

① 신규성을 거부하였으므로 **창작성의성을** 살펴본  
 ② **실문의 장** **비사할 디자인이라고** 출원 전

과거형 선행물한으로 되어 통상적 디자인과 그 차이  
를 쉽게 구분해 창작이 가능해 보이는 창작  
비용이성 출결이다.

4. 결론

창작비용이성 출결 등기 불가이다.

3

실문(2)-2

1. 신규성 구별여부

출원디자인과 선행물한에 있는 디자인은 물품이  
크리트보드와 책장을 바치한 물품에 채팅  
하는 바치한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갖추  
없다고 보여진다.

2. 창작비용이성 구별여부

(1) 판단방법 원칙

과거형 디자인으로 되어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  
하거나, 변화할 정도가 상연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하여 창작이 수준이 낮은 정도는  
창작비용이성 출결 없다.

(2) 사안

① 창작비용이성은 바치디자인간의 관계에는 적용

가능하고 ② 출원디자인인 화이트 등스경우 선형디자인  
 인의 색상을 상업적, 기능적으로 변형하여 각각  
 이 수단 낮은 것으로 노출 보조 출결 한다.

3. 결론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하여 각각  
 이 수단으로 낮은 것으로 노출 보조 출결한다.

실문 (2)-3

1. 신규성 부여 여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결합이  
벗겨질 하나 형태는 구기형태나 물품성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신규성 부여 가능 함 으로 노출 된다.

2. 상용성 부여 여부

(1) 구기형태 취사제

원칙적으로 상업적·기능적으로 노출 가능한 당연계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거나 경제 적 이 면 적 거리 면 등  
이 가능 하다.

(2) 사안

하나 결합이 벗겨질 요양 크기 새로운 디자인 변  
형 이 고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 본 것 을 발 견 한다.

3. 결론 - 출결 가능 하다.

## 10 [문제]

## I 논점정리

마이 B사 제품은 모세르크 쿼터 디자인 사를  
 출원해 등록권을 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창작성성이 결여되는지 ② 복합 사  
로서 특정 구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된다.

## II 법리근거

1. 신구성 - 法 33조 1항 각호

공인된 디자인과 높은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  
 하다.

2. 창작성성이 - 法 33조 2항

(1) 위

공인된 디자인, 즉기형태로부터 동양의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다.

(2) 판단방법 제(피)

경이나 즉기형태로부터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변형된 정도가 상연적·기능적 변형에 불과  
 한 경우에는 창작이 수월히 되어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고 해 창작성성이 결여  
 된다.

## 3. 法 34조 3호 특정권 사기

(1) 44

타인의 영득의 공권행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권 사기로 본다.

(2) 혼동을 가져올 우려 제외

① 혼동이란 디자인이 상표적 기능을 활용하여 혼동될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경우에 합치 혼동될 발생 가능성을 평가는 하고 특정권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하다.

## 4. 일특심사특권 출원 - 法 23조 6호

(1) 44

디자인 등록 출원이 디자인 등록 요건 중에 일특심사특권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외되는 심사요건

① 일특심사 등록 출원에 결국 신규성, 창작비율성, 실용성, 확대될 선행기술, 관련 디자인을 심사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창작비율성에 결국 저항이므로 특히 신체 창작 가능한 결국 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3) 적용되는 물품류

34조 2항 1, 2, 3, 5, 9, 11, 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Ⅳ 실문의 해결

##### (2) 신규성 위반 여부 - 소극

특허 디자인과 B사 하나나 몇 개 또는 몰표의  
특사이며 신규성을 위반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실A3제이다.

##### (3) 광각 비회심 위반 여부 - 적극

① 일부실A 등록 출원인인 광각비회심은 판단하기 어렵  
지만 B사의 제품은 4년 전부터 국내에서  
각종 사용된 결과 널리 알려져 있어서  
국가청대에 해당하므로 심사관은 이를 아주  
쉽게 광각이 가능하면 지적이 될 수 있다.

②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특허 디자인 A는 B사  
의 제품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변형의  
정도가 상당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  
하므로 광각비회심 불결이다.

##### (1) 일부실A 등록 출원인기 여부

저금통은 크카르브 원형 주위에 속카르브 외부  
심나늘크 출구에 개당한다.

##### (4) > 342 3로 위반하기 여부

B사 제품은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일체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진다고 오며라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형식이 저금통을 사용시 출두를 가  
저를 두려가 있으므로 불로써 거절이가

있다.

IV 결론

상각비용이성 른결과 부동자산에게 캐이카는타 등록이  
불가능하다.

## [문제 3]

6.5

1. 발명(1)

1. 발명(1)

(1) 관련디자인 - &gt;3항

디자인권과 같은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자기 등록 디자인 과발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출원 할 수 있다.

(2) 기본디자인 과발사 - &gt;3항 1항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 과발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 하여야 한다.

(3) 관련 디자인 과발 유사 - &gt;3항 2항

관련디자인 과발 유사한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전용실용권 실용권 - &gt;3항 3항

전용실용권이 기본디자인에 실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5) 동일성이 관련 디자인 - &gt;3항 4항

동일성이 관련디자인이 출원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6) 국제적 기준

디자인권과 같은 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관련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다.

(1) 시계적 기준

기본디자인 디자인 등록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  
 하는 범위만 등록이 가능하다.

2. 실용의 경

① 특허 디자인 B는 기본디자인을 A로써 관련디자인  
 출원을 한다 ② 디자인 B는 기본디자인 A와만  
 유사해야 하고 ③ 디자인 A를 출원한 후 3년내  
 에 출원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 A가 관련  
 디자인 B가 등록되기 전에 실정등록 되지 않거나  
 디자인 A가 소멸하다면 등록은 가능하다.

II. 실문(2)

1. 논점정리

기본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사안에 관련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공시될 경우에 관련디자인이  
 등록 될 수 없게끔 검토한다.

2. 법칙근거

(1) 상대성 원칙

적용할 관련디자인 출원의 장에 관련디자인을 심사  
 할 때 상대성과 선출원주의 적용을 배제한다.

(2) 예외제

기본디자인과 관련된 사안에 관련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이 공시될 경우라도 이러한 공시  
 가 기본디자인 이후에 한 것이라면 관련디자  
 인은 이를 이유로 상대성 위반에 걸리지 않  
 는다.

3. 사안

① 특정 3년 경과하기 전에 관련디자인을 출  
 원하였으므로 적용할 관련디자인 출원에 위  
 항하고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사  
 에 공시될 디자인 A, B가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또는 이를 사조 신작성 위법 되지 않고  
선출권형 디자인 A로부터 선출권형 지출되기  
 능하 등극 가능하다.

4. 결론  
 등극이 가능하다.

II  
 3.5  
 1. 출원절차

디자인 B에 관련디자인 출원절차 먼저 출원할  
 관련디자인 C가 있는 경우 등극 가능성이  
 문제되다.

2. 실적근거 - 法 35조 4항  
 기출디자인 과발 후사한 등 이상에 관련디자인 등  
 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디자인 사에는 신  
 작성, 선출권자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안  
 ① 디자인 B는 3년전에 출원되어 관련  
 디자인 출원이고 ② 그 후다 먼저 출원  
 디자인 C도 3년내 낼 것으로 적용된다.

③ 디자인 C는 디자인 A와 유사하므로 관련디자인으로  
 등록 출원 가능하다. ④ 디자인 B와 디자인  
 C의 사에는 실구성, 선형의 차이가 적으므로  
 오히려 B와 C가 유사한 점이 등록이 가능  
 하다.

4. 결론  
등록이 가능하다.

II. 4.5 실문 (4)  
실질심리

디자인 C는 디자인 A를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디자인 B와 유사하며 디자인 A와 관련하여 유사  
 권리 여부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게 검토된다. 기본디자인과만

2. 변적금지

(1) 특정특징 사항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 과한 유사한 디자인만  
 등록 받을 수 있다.

(2)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점의 제외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점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무한한 폭을 벗어난 관련디자인

으로 출원된 출가이다.

### 3. 사안

① 디자인 C는 3년 이내에 출원되어 시적 요건을  
 적당하다. ② 그러나 디자인은 디자인 A를  
 기본 디자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B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기본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  
 인지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A와 유사한 디자인  
 인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A와 유사한 디자인  
인고 B와 만 유사하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 [문제4]

3  
1. 실문(1)

1. 제33조 3항 - 확대형 선출권 주

이전 등록 출원한 디자인이 그출원을 할국에 공개 되어 디자인 공보에 게재될 다른 디자인 등록출원의 출원서에 개시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할 도면·사진 촬영에 포함될 디자인과 및 부정·기타의 법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객체적 요건

① 확대형 선출권 주는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의사만 특허(발명)의 창조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

3. 시기적 요건

출원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원인 출원일 기준이 없다.

4. 객체적 요건

① 도면·사진·견본에 일종의 유사한 것 적용 이 가능하다. ② 발명적 것 본질적 도면 사진 촬영 을 가 고 판단 한다. ③ 본질적

비사카사라고 적혀 가능하다.

## II 실문(2)

### 1. 확대할 선택권 주지 판단 방법 취지

보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기능이 클 경우  
 통상이 인정되고 원사가 동일-기사라고 해서  
 결속 있는 것으로 특정될 경우에 적혀 가능  
 하다.

### 2. 사안

① 확대할 선택권 주지는 비사 문들간에도 적용  
 이 가능하다. ② 특정된 디자인은 상관없이

선택된 디자인은 계단받침이나 상관없이 계단  
 받침의 특징으로서 용도의 기능이 유사하다.

③ 또한 디자인에 디자인과의 대체될 정도  
 로 특정되어 있다. ④ 원사가 동일하다  
 하다. 따라서 특정된 디자인은 확대할  
선택권 주지가 적용되어 특이 불가하다.

### 3. 결론

특이 불가하다.

III 2.5 실문(3)

1. 발견

선형물질을 광택하게 디자인 나타낼 필요 없이  
 각종 투입 상자로 늘려가며 관찰할 수 있다  
 면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실

① 사각형은 충진공격 되어 확대할 선택권이 과  
 를 가지지만 사각형에 디자인이 나타나  
 있다고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확대할 선택권  
 즉각 적용이 불가능하다. ② 이런 속도  
정확 추진 통제 디자인 파악  
 수 없다면 확대할 선택권 적용 없다.

번호 (출원 17)

105

I. 의의

II. 사용법 → 즉 사용 방법

본 발명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본 발명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III. 사용법 - 즉 사용 방법

본 발명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본 발명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IV. 결론

(1) 사용법

"본 발명"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2) 사용법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3) 사용법

"본 발명"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본 발명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허법 제 22조 제 1항 제 1호는 "특허청장이  
 특허법 제 2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4) 특허법 제 22조

1) 특허법 제 22조 제 1항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2) 특허법 제 22조 제 2항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특허청장이 하는 특허청장이



비밀이 사본이 오면 오면 안된다.

2. 구입한 시 계약

(1)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2)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①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3) 구입한 시 계약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비밀이 사본이 오면 안된다. 구입한 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

3.5 사본이 오면 안된다

- (1) 사본이 오면 안된다





본문 및 2 항문의 명칭 명칭으로서 2항  
"부속"을 제외하여 명칭으로서 2항의 기  
PI 부속에 대한 명칭으로서 2항의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2항으로서 명칭으로서  
2항으로서 명칭으로서 - 부속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부속"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2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2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이 명칭으로서

2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3 I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II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2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명칭으로서





주요 계약 조항을 계약서 본문에 기재  
 후 이를 제 2항에서 기 한다. 계약조건이  
 상대방이 신중히 주의 하여야 할 사항 이  
 지는 계약서 신중히 주의 하여야 할 사항 이  
 지는 계약서이다.

3) 계약 - 계약의 효력

-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효력

-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계약

①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계약의 효력 - 계약

-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2. 2011-27~~  
~~2. 2011-27~~

1. 2011-27

1) 2011-27-1

2011-27-1은 2011-27-1과 2011-27-1을  
2011-27-1과 2011-27-1을  
2011-27-1과 2011-27-1을

2) 2011-27-2

2011-27-2는 2011-27-2와 2011-27-2

3) 2011-27-3

1) 2011-27-3-1

2011-27-3-1은 2011-27-3-1과 2011-27-3-1

2) 2011-27-3-2  
2011-27-3-2는 2011-27-3-2와 2011-27-3-2

3) 2011-27-3-3  
2011-27-3-3은 2011-27-3-3과 2011-27-3-3

4) 2011-27-3-4  
2011-27-3-4은 2011-27-3-4과 2011-27-3-4

5) 2011-27-3-5  
2011-27-3-5은 2011-27-3-5과 2011-27-3-5

6) 2011-27-3-6  
2011-27-3-6은 2011-27-3-6과 2011-27-3-6

7) 2011-27-3-7  
2011-27-3-7은 2011-27-3-7과 2011-27-3-7

8) 2011-27-3-8

2011-27-3-8은 2011-27-3-8과 2011-27-3-8

2011-27-3-8

2)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 2-268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3)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 2-268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2) 지속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①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 ②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4)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

55

5) 지속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이해)

2. 1차

(1) 1차 시험 - 1차

1차 시험의 합격률과 2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2) 2차 시험 - 2차

1차 시험의 합격률과 2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2차 시험의 합격률과 3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3차 시험의 합격률과 4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4차 시험의 합격률과 5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5차 시험의 합격률과 6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6차 시험의 합격률과 7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3) 2차 시험 - 2차

2차 시험의 합격률과 3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3차 시험의 합격률과 4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3. 2차 - 2차

2차 시험의 합격률과 3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3차 시험의 합격률과 4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3.5

(1) 1차

(1) 1차 시험 - 1차 (1997)

1차 시험의 합격률과 2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2차 시험의 합격률과 3차 시험의 합격률에 차이가 있다



0점이다.

2. 100%

100%의 이익 - 100%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3. 100%의 이익 - 100%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4. 100%의 이익 - 100%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5. 100%의 이익 - 100%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3.5 점 (4)

100%의 이익이 100%의 이익을 나타내므로 100%의 이익을 나타내다



이러한 경우 특허청의 결정에  
대항하여

2. 소의

1) 특허청의 결정 - 취소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제기된다

2) 특허청의 결정 - 무효판결

① 소의 대상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제기된다

② 소의 대상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③ 소의 대상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④ 소의 대상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3) 소의 대상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제기된다

4) 소의 대상 - 무효판결

① 소의 대상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② 소의 대상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2017

Case 47

1. 사실 (1)

1. 상호적인 이익을 추구 → 이익을 추구  
 상호이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과 이익을 추구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2. 법리

(1) 상호이익의 법리

상호이익의 법리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2) 상호이익의 법리

1. 사실

상호이익의 법리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2. 법리

상호이익의 법리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본 발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3.5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목적은 본문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분한다

가) 구분하는 방법 <sup>구분</sup>

특정 발명분야에서 기술적진보의 관점에서 관여  
 기술이 관여되는 부분이 기술적 상충 목적  
 상충의 본질적인, 그 상충의 부분이 기술적  
 이점의 이동 기술적진보의 필요를 위해  
한 구분의 특이성은 관여를 위해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기술적  
관여 부분이 기술적진보를 위해 한  
구분의 특이성은 관여를 위해

나) 구분 -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구분의 특이성은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한

2. 구분의 특이성은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구분"과 "구분"의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구분의 특이성은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한

4. 구분 -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구분의 특이성은 기술적 필요의 이동을 위해  
한